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의 안 번 호 제2022-009-057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2. 5. 25

## 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한다.

가.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나. 가.에 대한 시정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 이 유

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(법률 제14839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 리자이며,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 일반현황 >

대표	설립일자	상시직원 수	예산	주요서비스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<sup>1)</sup>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건과 관련하여「개인정보 보호법」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( )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1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## 가. 사고 경위 및 규모

피심인은 홈페이지 접속기록 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한 후 접속기록 확인 페이지의 접근통제 설정을 하지 않아 접속기록 확인 페이지 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.

접속기록 리스트 중 동일인 중복 제거 결과 총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, 유출항목은 성명, 아이디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이다.

## 나. 사고인지 및 대응

<sup>1) 2020. 8. 5.</sup> 시행된 개정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)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승계(제2항), 법 시행 전 행정안전부가 행한 고시·행정처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간주(제3항)

- o ('20.6.15.) 민원인이 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제보
- \* 유출 URL:
- o ('20.6.19.) 인터넷진흥원에서 피심인에 유출사실 알림(11:00)
  - 홈페이지 수탁사( )에서 확인 후 유출된 페이지 차단(13:00)
- ('20.6.23.) 정보주체에게 문자 및 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 및 구 글에 유출된 접속이력 페이지 검색 제외조치

#### 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## 가.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- 1) 피심인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2) 피심인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나 양방향 알고리즘( )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사실이 있다.
- 3)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항목 누락 없이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접속기록을 누락하여 보관·관리한 사실이 있다.

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. '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 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전부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Ⅲ. 위법성 판단

## 1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## 가. 관련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이 명이 당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(제2호),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(제3호),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(제4호)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47호)」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 컴퓨터, 모바일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제6조 제3항)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 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 (제7조 제2항)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,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·관리하여야한다. (제8조제1항)

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①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6호 제3항), ②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(고시 제7조제2항), ③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일부 누락한 사실(고시 제8조제1항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.

## Ⅳ. 처분 및 결정

## 1. 시정조치 권고

가. 피심인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나. 가.에 대한 시정권고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(시 정조치 등)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조치권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2022년 5월 25일

위원장 윤종인 (서명)

부위원장 최 영 진 (서 명)

위 원 고성학 (서명)

위 원 백대용 (서명)

위 원 서종식 (서명)

위 원 염흥열 (서명)

위 원 이희정 (서명)

위 원 지성우 (서명)